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사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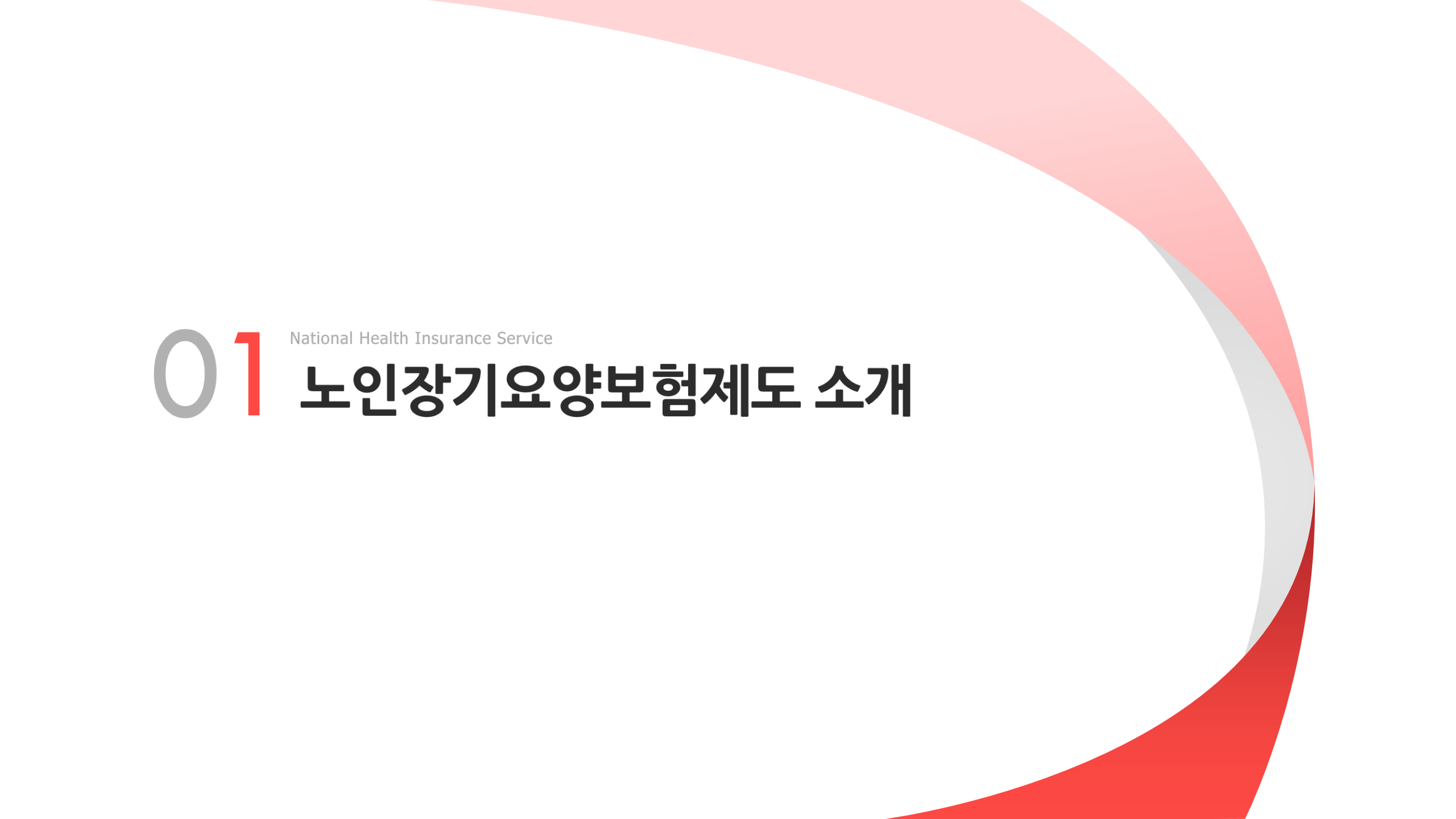


목 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02.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0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목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 활동 등을 지원
-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

재원

보험방식 및 재원 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
-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 방식

장기요양보험료	$\text{건강보험료액}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0.9182\%)}{\text{건강보험료율}(7.09\%)}$	
국고지원금 국가(지자체)보조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공적부조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20%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



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



결과통지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인정신청



등급판정



급여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구분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미만)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가사 활동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인지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하는 정도의돌봄서비스를받을때지급)

※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 제출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급여 이용 희망할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0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개요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낙상 요인 제거 등 주거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 지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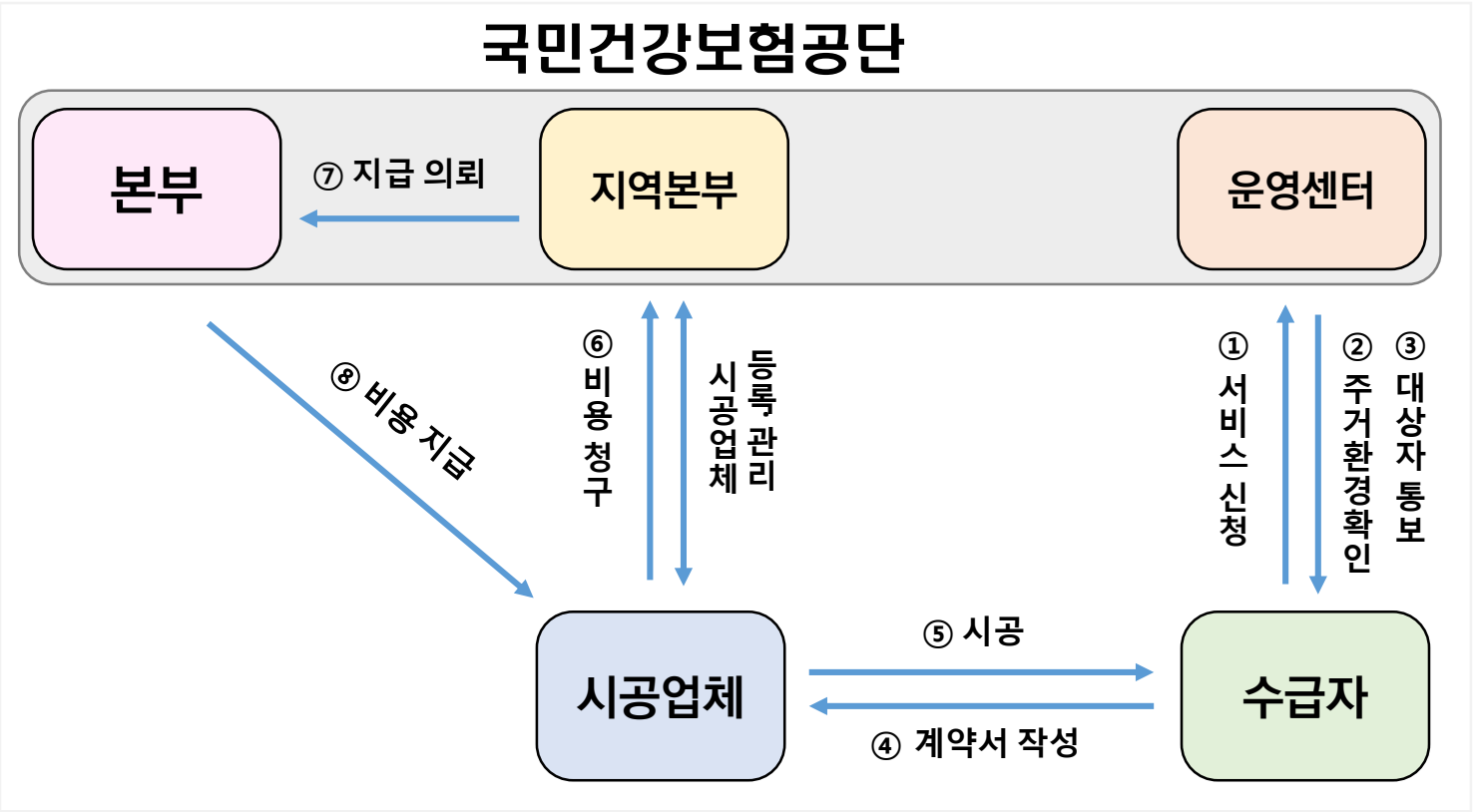
시공업체 등록제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등록제 실시

- 집수리 관련 업종, 국세(지방세) 완납 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만 등록되어 시범사업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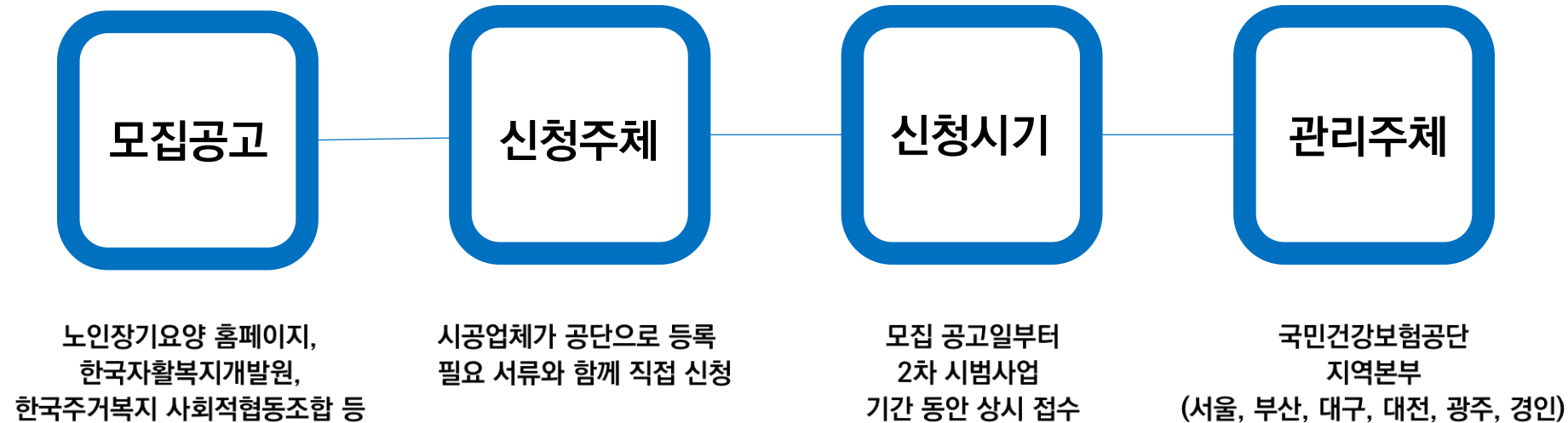
1차 시범사업

- (사업 기간) '23. 9. 27. ~ '24. 3. 31. (시범 지역) 5개 시·도(부산, 강원, 충북, 경북, 전남)의 15개 지역



공단 신청 접수, 주거환경확인, 시공업체 등록관리, 비용 심사지급

시공업체 방문 견적 상담, 품목 시공, 비용 청구, A/S 등



시공업체 등록제 신청기준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수행하는 업체

+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

사무실 운영 업체

<시공업체 등록시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무실 사진

사전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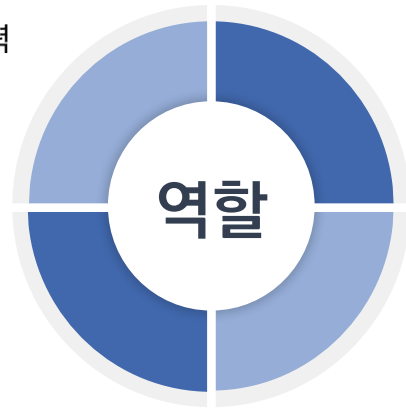


상호협력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단과 시공업체는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상호 협력

시공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품목 시공



청구

공단 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공비용을 공단에 청구

관리

주거 환경에 맞는 적정품목을 시공하고
사후에 지속적인 품질 유지관리

시범사업 세부 절차



※ 인증서 등록절차는 추후 안내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시공업체 각각 보관



인증서
등록

견적서 작성

표준계약서
작성

전산청구

실무자료 추후 안내 예정

- ① 인증서 등록 절차
- ② 견적서 작성 방법
- ③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 ④ 전산청구 절차 및 방법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1. 문턱제거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 실내 문턱 제거(바닥재 등 주변 마감 포함)
- (욕실) 문턱 제거에 따른 출입구에 트렌치(배수로) 설치
- 필요 시 '문 교체' 품목과 같이 제공 가능
 - 문·문틀 철거 및 기능상태에 맞는 문으로 교체(미닫이문 등)

2. 미끄럼 방지 타일



가능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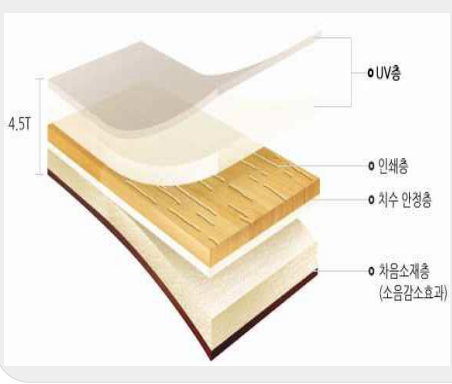
현관, 욕실, 주방

시공내용

- 바닥 타일을 논슬립 등 물이나 먼지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교체
- 덧방 시공 또는 해체 후 타일 교체 가능
- 필요 시 바닥 배수구 설치 포함하여 시공



3. 실내 바닥마감



가능구역	거실, 침실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재질은 좌식생활자를 위해 차갑지 않은 것을 사용◦ 시각장애인은 거실 내 위치 및 가구와의 거리감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마감재는 감촉이 좋고 탄력이 있으며,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며, 더러움을 덜 타고 청소가 쉬운 재질을 사용◦ 약시인의 경우 방의 경계 및 구석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의 색을 벽면이나 걸레받이와 차별화

4. 안전의자



가능구역	현관, 욕실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이식 의자를 벽측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필요시 내려서 의자로 사용함으로써 현관부의 공간을 활용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5. 조명		
센서등 	가능구역	현관, 다용도실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센서등 설치(교체) - 거동 시간 고려하여 켜져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 및 센서 기능을 on/off할 수 있는 모델로 교체
일반등 	가능구역	거실, 침실, 욕실, 주방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상태에 적합한 조명 교체 설치(교체) -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 - 필요 시 국부조명, 조도조절기(조광기) 설치 가능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6. 조명 리모컨



가능구역 거실, 침실

시공내용

- 누운(앉은)곳에서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 스위치 설치(교체)
- 거동 및 저하된 시력을 고려하여 넓은 조작판 형태의 스위치(⑦번 품목) 추가 제공 가능(구형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 같은 경우 일반등과 함께 교체 가능)

7. 조명 스위치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 조작판이 큰 램프형 스위치 등 사용 용이한 스위치로 교체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8. 도어체크(도어클로저)



가능구역 현관

시공내용

-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수급자 또는 휠체어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 닫힐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제품으로 설치(교체)
- 문을 고정할 수 있는 도어스토퍼 추가 설치 가능

9. 비디오폰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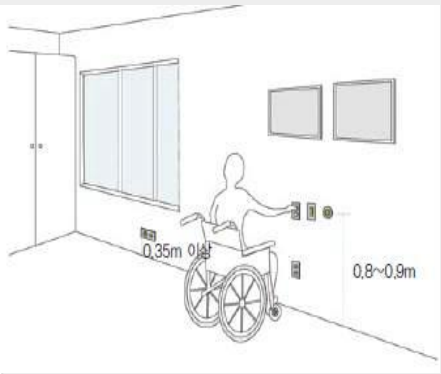
시공내용

- 외부 방문객 정보 제공을 위한 비디오폰 및 현관 카메라(초인종) 설치
 - 이동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침대에 누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설치
- 필요 시 디지털도어락, 비디오폰 연동기, 리모컨 포함하여 설치 가능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10. 스위치, 콘센트 위치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스위치 및 조작기는 최소한의 힘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스위치는 조작부분이 큰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의 색과 대비- 외상 또는 좌식 생활자는 누운 채로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 스위치나 센서 부착 스위치, 표시등 부착 스위치 등이 편리

11. 화재감지기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12. 가스자동차단기



가능구역 주방

시공내용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가스 타이머콕 설치

13. 세면대



가능구역 욕실

시공내용

- 수급자 신체상태에 적합한 세면대 설치(교체)
 - 수급자 신체 치수에 따라 높이 조절하여 설치
 - 필요 시 별도 선반 및 세면대 거울 포함하여 설치 가능
 - 세면대 철거 및 벽 타일 등 마감 포함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14. 수전



가능구역 욕실, 주방

시공내용

- 레버식, 센서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교체
- 높낮이 조절식 샤워기 설치(교체)
 - 샤워기 헤드 및 하단 토출구 있는 샤워기
 - 샤워기 호스 긴 것으로 교체하여 설치 가능

15. 샤워기 거치대



가능구역 욕실

시공내용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
 - 또는 샤워기 걸이를 위 아래 두곳 이상 설치
- ※ 기존 샤워기에 거치대만 설치하는 품목으로 샤워기 교체 필요한 경우 ‘⑭샤워수전’ 품목(높낮이 조절식 샤워기)으로 제공

서비스 품목 종류 및 설치 기준



16. 양변기(위치 이동 포함)



가능구역 욕실

시공내용

- 양변기 신규 설치(수세식→양변기) 또는 기존 양변기 교체
- 수급자 신체치수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의 양변기 제공
- 필요 시 휴지걸이 설치 포함
- 기존 양변기 철거 및 타일 해체, 배수구 설치 등 포함
- 작은 범위 내에서의 이동 또는 방향 변경

17. 문 손잡이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 손에 힘이 없는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레버형, 푸쉬풀(Push-pull)형, 막대형과 같이 잡기 쉬운 형태로 교체
- 신체상태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에 설치
 - (좌식생활자) 손잡이를 위·아래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긴 수직형으로 설치



18. 문 교체



가능구역

현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다용도실

시공내용

- 문틀, 문 철거 및 교체 시공(문틀 제외 문 자체만 시공 가능)
- 열기 쉬운 미닫이문 또는 덧문 형태의 미닫이문으로 교체
- 미닫이문 설치 어려운 경우 여닫이문 형태도 가능
- 필요 시 '문턱제거', '문 손잡이' 품목과 같이 제공
- 문 개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닫는 방향 변경
 - 문틀 교체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제공

감사합니다

